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b>무주택 세대주</b></li> <li>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li> <li>②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 ※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선정</li> <li>③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li> <li>④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ul>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li> <li>② 잔여세대 발생 시 : 기타지역 거주자 공급(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li> </ul>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또는 기타지역(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가점제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li> <li>-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 추첨제 적용</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분양권·입주권 등 포함)</li>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li> <li>- 피부양중인 직계존속이 요양시설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li> <li>※ 배우자 분리세대 시</li> <li>-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li>※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li>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총 가점 점수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②+③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 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및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부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 기록대조일을 주민등록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30.)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체류여부 확인 (현재 해외체류여부 또는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 직계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체류여부 확인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신청자 구비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3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사전 서류 제출 후에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